

성남 도시관리계획(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) 결정(변경) 고시

성남 도시관리계획(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. 11. 20.

성 남 시 장

□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[미변경 사항은 게재 생략]

○ 제2장 공동주택용지

제7조(담장에 관한 사항)

구분	계획내용
제7조 (기정)	①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담장의 높이는 1.2m이하로 하며 담장의 재료는 생울타리로 한다. ② 녹지축 및 공원 등의 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. (이하 생략)
제7조 (변경)	① 담장의 설치는 지양하되, 부득이 설치할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. ② 녹지축 및 공원 등의 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등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. (이하 생략)

□ 관련 도서: 게재생략(열람장소 - 성남시청 도시계획과)